

2003.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최재근 의원	소관부서	재무과
질문내용	『서봉리사이클링』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내역		

○ 『서봉리사이클링』 연도별 변상금 부과내역

사 용 기 간	부과일시	부과금액(원)	부과자	비고
1997. 1. 25~ 1997. 12. 31	1998.3.31	12,800,000	박 형 천	
1998. 1. 1~ 1998. 12. 31	1999.4.30	23,647,000	서봉리사이클링	
1999. 1. 1~ 2000. 3. 31	2000.4.30	25,800,000	서봉리사이클링	
2000. 4. 1~ 2001. 1. 31	2001.3.2	17,826,000	서봉리사이클링	
2001. 2. 1~ 2001. 8. 31	2001.9.30	12,236,000	서봉리사이클링	
2001. 9. 1~ 2001. 12. 31	2002.2.25	7,041,000	서봉리사이클링	
2002. 1. 1~ 2002. 12. 31	2003.4.15	20,907,000	서봉리사이클링	

2003.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

질문위원	이현택	소관부서	재무과
질문내용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		
<p>1. 공사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다대1동 1541-1번지 ○ 도급업체 : 한화기계(주), 태광중공업(주) ○ 공사기간 : 2000. 3.20~2003. 8.30(계약상 준공기한 2002. 7.31, 395일 지체) ○ 공사금액 : 1,959,600천원(한화기계 935,500천원, 태광중공업 1,024,100천원) ○ 규 모 : 부지 220평, 연면적 154.6평(1일 50톤 처리) <p>2. 지체상금 부과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 태광중공업(주) <p style="margin-left: 40px;">· 관련근거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7조 제①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③항</p>			

▷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 계약에 있어서,
타구성원의 분담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 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임없는 구성원은 지체상금 면제

○ 부과금액 : 220,000천원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①항

▷ 지체상금(1,024,000,000원 × 1/1000 × 395일 = 404,519,500원)이

계약보증금(220,000,000원)상당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상당액만 부과

2003.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최재근 의원	소관부서	재무과
질문내용	2003년도 구입차량의 수리비 지출내역 제출요망		

○ 수리비 지출내역

(금액단위 : 원)

사 용 부 서	차량번호	차 명	최 초 등록일	수 리 내 용	금 액	비 고
재무과	31마7453	뉴그랜저	'03. 7. 3	“해당사항 없음”	-	-
환경청소과	90나1290	11톤암롤	'03. 9.26	“해당사항 없음”	-	-
“	75노3449	다마스 7인승	'03. 3.27	“해당사항 없음”	-	-
지역경제과	80무6688	봉고 더블캡	'03. 3.12	○ 운전석 문짝 수정 및 장식교환	73,700	○ 경광등·마이크·앰프설치 : 913,000
허가민원과	80무8918	포터 더블캡	'03. 4.11	○ 우측 콤비등 교환	25,300	-
교통행정과	75노3115	스타렉스 11인승	'03. 3.14	“해당사항 없음”	-	○ 경광등설치 : 500,000
과정3동	80무6498	포터 더블캡	'03. 3.11	“해당사항 없음”	-	○ 적재함·경광등·앰프설치 : 539,000
과정4동	80무6491	포터 더블캡	'03. 3.11	“해당사항 없음”	-	○ 앰프설치 : 239,000
감천2동	80무6457	포터 더블캡	'03. 3.11	○ 배터리교환	70,000	○ 적재함·경광등·앰프설치 : 539,000

2003.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최천수, 조정희, 김희곤 위원	소관부서	재무과
질문내용	SK VIEW아파트 부지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SK VIEW아파트 부지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건설과 부과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m ²)	부과기간	부과금액
시유지	하단동 845-43	339	2001. 1. 1 ~ 2002. 5. 31	10,390,500
	하단동 845-44	158		
구유지	하단동 845-47	663		
	하단동 845-48	2		
	하단동 845-49	435		
	하단동 845-50	25		
	하단동 845-51	85		
계		1,707		10,390,500

※ 산출내역 :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601호)개정에 따른 요율 적용

2002. 5. 5까지 **0.005** ⇒ 2002. 5. 5.이후 **0.025**

▷ 2001.1.1~12.31 : $530,000 \times 1,707\text{m}^2 \times 0.005 \times 12/12 \times 1.2 = 5,428,300$

▷ 2002.1.1~4. 30 : $646,000 \times 1,707\text{m}^2 \times 0.005 \times 4/12 \times 1.2 = 2,205,400$

▷ 2002.5.1~5. 31 : $646,000 \times 1,707\text{m}^2 \times 0.025 \times 1/12 \times 1.2 = 2,756,800$

◇ 재무과 부과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m ²)	부과기간	부과금액
국유지	하단동 870-310	99	2002.7.6~10.3	925,140
시유지	하단동 845-43	333	2002.7.2~11.25	5,291,850
	하단동 845-44	158	학교부지로 부과대상 아님	
구유지	하단동 845-47	663	2002.6.5~11.28	22,871,580
	하단동 845-48	2		
	하단동 845-49	435		
	하단동 845-50	25		
	하단동 845-51	85		
계		1,806		29,088,570

제24조의2 (소심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 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3 (출석)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7.1]

제24조의4 (운영계획)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7.1]

제25 삭제 <1999.8.6>

제26조 (정용공사 대행시별 총용규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26조의2 (정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정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3 (정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정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정용허가를 하는 때에 정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정용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7.1>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정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정용하지 아니하거나 정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정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정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정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4 (정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정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정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정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정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정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5 (정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수송}열수송시설^{기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9.16, 1994.12.23, 1999.8.6>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정용료의 2분의 1의 금액
[본조신설 1993.8.14]

[시행일: 2003. 1. 1]

[별표2]<신설 1993. 8. 14, 1994. 9. 16, 1996. 7. 1, 1999. 8. 6, 2002. 5. 6>
 정용료산정기준표 (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정 용 료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정 용 료				
		정용단위	기간단위	소 재 지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공중전화 등 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350	900	6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0	1,350	900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직압관, (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지름 0.1미터이하	850	550	150	
				지름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1,750	1,150	300	
				지름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3,500	2,300	600	
				지름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5,250	3,500	900	
				지름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7,000	4,650	1,200	
				지름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8,750	5,850	1,500	
				지름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지름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21,850	14,600	3,750	
				지름 3.0미터초과	30,600	20,450	5,250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지름 0.1미터이하	1,300
	지름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600	1,750				450	
	지름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5,200	3,500				900	
	지름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850	5,250				1,350	
	지름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0,450	7,000				1,800	
	지름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3,100	8,750				2,250	
	지름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9,650	13,100				3,350	
	지름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2,750	21,850				5,600	
	지름 3.0미터초과	45,850	30,600				7,8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판·간판(들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인내 표지·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간판(들출간 판을 포함한다)	(1월미만 정용)	1㎡				
		기 타	표시면적 1㎡	1년	88,400	58,950	15,000
	사 설 인 내 표 지		1개	1년	73,650	49,100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	표시면적 1㎡	1일	300	150	50
		기타의 용도		300	200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117,900	30,000
		기 타		1년	88,400	58,950	15,0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휴 화물적치장·휴 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동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동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차판매기·상점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노점·자동차판매기· 상점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정용한 것		정용면적 1㎡	1일	300	200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정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 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소재지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정용료를 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정용면적, 정용률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정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 6.2. 위 표 제2호의 정용률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0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정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장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에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예산현황 및 지출내역

예산과목	법제관리 예비비등(기타) 배상금등	자금배정액	
총 예산액	15,380,000		
본 예산액	15,380,000	1/4분기 배정	3,845,000
제1회 추경		2/4분기 배정	3,845,000
제2회 추경		3/4분기 배정	3,845,000
제3회 추경		4/4분기 배정	3,845,000
이월액			
전용액		예산배정잔액	0
총 지출액	10,743,570	총배정액	15,380,000
잔액	4,636,430	배정잔액	4,636,430

일자	적요(구매내역)	금액
02-03-11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1,866,470
02-06-12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1,000,000
02-06-13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4,016,480
02-06-14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937,760
02-06-14	증인여비	49,500
02-07-02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2,000,000
02-11-08	소송비용(패소비용)지급	873,360

1/4

10,743,570
10,640,000